

뉴질랜드의 온라인 회사설립 시스템 운용 실태조사

- 양현봉 선임연구위원(중소벤처기업연구실)

I. 개요

1. 출장자 : 중소기업연구실 양현봉 선임연구위원
2. 출장지역 : 뉴질랜드 오클랜드
3. 출장기간 : 2012. 10. 28 ~ 2012. 11. 3
4. 출장목적 : 뉴질랜드의 온라인 회사설립(창업) 시스템 운용 실태조사

II. 방문 일정 및 기관, 면담자

< 10월 28일 >

- 서울 출발 → 뉴질랜드 오클랜드 도착(10월 29일)

< 10월 29일(월) >

- 방문기관 : kotra 뉴질랜드 무역관

- 면담자 : 이주연 과장
- 전화번호 : 64-9-373-5792(ext 203)
- e-mail address : joanne@kotra.co.nz

< 10월 30일(화) >

- 방문기관 : Newzealand Companies Office
 - 면담자 : KAREN ISHERWOOD(Business Systems Development Unit Manager) 외 2인
 - 전화번호 : 64-9-916-4546
 - e-mail address : karen.isherwood@companies.govt.nz

< 10월 31일(수) >

- 방문기관 : Accounting House
 - 면담자 : Eric Park Accountant
 - 전화번호 : 64-9-379-0066
 - e-mail address : hwpark@accountinghouse.co.nz

< 11월 1일(목) >

- 방문기관 : Korean Chamber of Commerce & Association (NZ) Inc
 - 면담자 : Thomas AN President
 - 전화번호 : 64-9-366-0012
 - e-mail address : an.goodinfo@gmail.com

< 11월 2일(금) >

- 방문기관 : GMP Pharmaceuticals
 - 면담자 : Minki Son Manager
 - 전화번호 : 64-9-272-1110
 - e-mail address : minkison@gmp.net.nz

< 11월 3일(토) >

- 뉴질랜드 오클랜드 출발 → 서울 도착

Ⅲ. 출장결과 주요 조사내용

- 뉴질랜드의 온라인 회사설립 시스템 운용 실태 및 시사점
: < 별첨 자료 > 참조

<별첨> 뉴질랜드의 온라인 회사설립 시스템 운용실태 및 시사점

1. 뉴질랜드의 법인설립 절차 및 법인 관리시스템

(1) 법인설립 절차

- 뉴질랜드는 월드뱅크(WB)가 매년 전 세계 180여개 국가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‘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’에서 수년간 1위를 유지해오고 있음.
 - 뉴질랜드는 온라인에 의해 주식회사 등의 법인이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, 법인설립 과정에서 1단계 1일이 소요되고 있음(<표 1> 참조).
 - *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재택창업시스템을 활용하더라도 4단계 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- 뉴질랜드에서 온라인을 통한 법인설립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.
 - 첫째, 온라인을 통해 회사명 승인 신청을 함.
 - 둘째, 동일 회사명이 없을 경우 회사등기소(Companies Office)에 NZ\$160.22(회사명 확보비용 NZ\$10.22 + 회사등록비 NZ\$150)의 수수료와 법인설립 관련 서류를 제출함
 - 셋째, 회사등기소(Companies Office)는 회사설립 요건이 충족되면 회사설립증명서를 발급함.
 - 넷째, 회사설립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지역세무서에 납세자번호(IRD Number)를 신청하여, 납세자번호를 부여받게 됨.
-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3종류임.

- 즉, 이사동의서, 주주동의서, 정관의 3가지 서류가 필요함.

< 표 1 > 뉴질랜드와 한국의 온라인 법인설립 절차 비교

< 한국 >		<뉴질랜드>	
절 차	기 간	절 차	기간
① 상호 검색	1	온라인 처리 1) 회사명 승인 신청 2) 회사등기소에 NZ\$100 수수료와 함께 관련 서류 제출(법인설립 완료) 3) 회사등기소 :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회사설립증명서 발급 4) 납세자번호(IRD Number) 신청·부여 : 지역세무서	1일
② 법인인감 제작	1		
③ 온라인 처리	4		
④ 취업규칙 신고	1		
4단계	7일	1단계	1일

○ 뉴질랜드는 회사(법인) 설립에 따른 자본금 및 법인인감이 없으나, 회사가 뉴질랜드에 소재하고 있다는 ‘주소’(Address)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.

(2) 법인 유지·관리 시스템

○ 뉴질랜드에서는 회사설립 이후의 의무사항으로 회계감사보고서 및 연례보고서(Annual Return) 등을 제출해야 함.

1) 회계감사보고서 제출

- 대주주(주식의 25% 이상 소유)가 외국의 모기업인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, Financial Reporting Act 1993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후 재무제표를 회사등기소에 결산일로부터 5개월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.

2) 연례보고서(Annual Return) 제출

- 법인을 등록한 첫해를 제외하고 모든 법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회사등기소장에게 제출해야 함.
 - 현지법인의 등록된 사무실 주소, 현지법인의 서류송달 주소, 주식자본금 요약, 이사들의 인적사항, 과거/현재의 이사 명단, 최종 연차총회일

3) 연차보고서(Annual Report) 제출

- 현지법인은 연례보고서 (Annual Return) 외에 별도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이의 수신을 받고자 원하는 모든 주주들에게 발송하여야 함.
- 연차보고서는 회계 마감일 후 5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, 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함.
- 연차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.
 - 재무제표 사본, 이사보고서, 감사보고서(필요시), 이사들의 인적사항, 연간수입이 NZ\$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임직원의 수

2. 시사점

(1) 온라인 법인설립 활성화

- 뉴질랜드의 경우, 90% 이상이 온라인을 활용하고 법인을 설립하고 있음.
- 우리나라는 재택창업시스템이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기준

으로 2.5% 정도만이 온라인을 활용하고 있음.

- 향후 재택창업시스템의 운용실태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온라인에 의한 법인설립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 - 이를 위해서는 재택창업시스템만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요인들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.

(2) 온라인 법인설립에 있어 법인인감 대체 방안 마련

-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상호검색 이후 법인인감을 제작하도록 하고 있음.
 - 법인설립자는 법인인감 제작 이후, 이를 스캔하여 법인설립 서류의 하나로 첨부해야 함.
 - 법인을 설립하는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스캐너를 갖고 있지 않아, 법인설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, 이를 위해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게 됨.
 - 이에 비해 뉴질랜드는 법인인감 제작 없이 대표이사의 서명으로 대신하고 있음.
- 우리나라도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차원에서 법인인감 제작 부분을 뉴질랜드와 같이 대표이사의 서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.

(3) 법인설립은 쉽게,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안 마련

- 우리나라는 법인설립 과정이 매우 어려운 반면, 사후관리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임.
- 이에 비해 뉴질랜드는 법인설립 절차가 단순하여 1일 이내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반면, 사후적으로 법인으로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후관리

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.

- 우리나라도 뉴질랜드와 같이 법인설립은 쉽게, 사후관리는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설립 및 사후관리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.

- 법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뉴질랜드와 같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재택창업시스템을 보강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.